

춘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729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나5062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729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인제군

변 론 종결 2016. 12. 22

판 결 선고 2017.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B 창고용지 6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창고시설(재활용수집보관창고) 198㎡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79. 1. 1.부터 1979. 12. 31.까지 강원 인제군 C 임야 4,548평 중 500평을 대부받기로 하는 토지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분할 전 강원 인제군 B 임야 6732매는 2012. 3. 22. 강원 인제군 B 창고용지 660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강원 인제군 D 임야 173㎡, 강원 인제군 E 임야 5,899㎡(2012. 3. 22. 지목이 '답'으로 변경)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07. 4. 12.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창고(재활용수집보관창고)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강원 인제군 E 답 5,899㎡에 대하여 대부기간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정하여 대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이 있고, 재활용품 및 쓰레기 이 사건 토지와 강원 인제군 E 토지에 침범하여 원고가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결한 강원 인제군 C 임야 4,548평 중 500평에 대한 대부계약은 1979. 12. 31. 기간이 종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강원 인제군 E 토지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임정택

별지